##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04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고동진·강승규·성일종

김상훈 · 엄태영 · 한지아

조경태 · 조지연 · 백종헌

서범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첨단의료, 모빌리티, 로보틱스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산업 분야, 재난 및 범죄예방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공익적 필요가 높은 분야 등에서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처리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어지속가능한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국민 신뢰 및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

한 경우에는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때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정보 등의 처리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요인 평가를 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동일·유사한 심의·의결이 있었던 경우 등에는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하되 심의·의결한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등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28조의12 및 제28조의13 신설).

법률 제 호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5절(안 제28조의12 및 제28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 제28조의12(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 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성능 개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위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1. 영상, 음성, 이미지, 부호 및 문자 등 처리되는 정보의 특성,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
  - 2.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경우

- 3.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 가.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등 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을 하려는 때에는 민감정보 등의 처리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을 요청한 내용이 종전에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의 내용· 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심의 • 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유형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1. 심의 · 의결을 요청한 자와 그 주요 내용
- 2.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요약한 내용
- ①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방법, 보호위원회가 부여하는 조건, 세부 심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13(관리·감독 및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① 보호위원회는 제 28조의12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와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 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보호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
- 2. 제28조의12제1항 각 호의 요건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보호위원 회가 부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8조의12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임에도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평가 후 그 결과를 보호위 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호위원회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감독, 자료 제출 요구, 개인정보 처리 제한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5절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u>&lt;신 설&gt;</u>	제28조의12(인공지능 기술 개발
	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
	집한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공
	지능 기술 개발(성능 개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
	다)을 위하여 당초 수집한 목
	적 외로 처리할 수 있다.
	<u>1. 영상, 음성, 이미지, 부호 및</u>
	문자 등 처리되는 정보의 특
	성,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u>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u>
	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u>어려운 경우</u>
	2.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u>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한</u> <u>경우</u>
- 3.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 <u>가.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u> 으로 하는 경우
  - 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인공지 등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등 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 의결을 하려는 때에는 민감정보 등의 처리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 인정보처리자에게 기간을 정하 여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위험 요인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 의결을 요청한 내용이 종전에 보호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ㆍ서 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심의・ 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 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려 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

<신 설>

하는 목적과 유형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 함하여야 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1. 심의·의결을 요청한 자와그 주요 내용
- 2.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요약한 내용
- ①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방법, 보호 위원회가 부여하는 조건, 세부 심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13(관리·감독 및 개인 정보 처리의 제한) ① 보호위 원회는 제28조의12제2항에 따 라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 여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 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와 관계자

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 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심의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의 전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받은 경우
- 2. 제28조의12제1항 각 호의 요
  건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 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 개 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달성하 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8조의12제3항에 따라 보 호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제출 하도록 한 경우임에도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평가 후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 회가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 여 제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호위원 회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감독, 자료 제출 요구, 개인정보 처리 제한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